

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, 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실내주차장, 목욕장업

- (하반기 측정대상시설)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어린이 놀이시설

3. 측정유예 오염물질 및 측정방법
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2의 유지기준 6개 항목 및 별표3의 권고기준 4개 항목 등 총 10개 오염물질

4.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

가. 서면제출 : 측정유예대상 소유자등은 유예기간 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,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

나.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: 측정유예대상 소유자등은 유예기간 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,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(<http://www.inair.or.kr>)에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

5. 유예기간 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

측정유예기간 동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6조제3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● **환경부공고제2020-842호**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9일

환경부장관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낮은 이행보증 범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량 확대,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산정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폐자원관리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폐자원관리과
- 전자우편 : younggle@korea.kr
- 팩스 : (044) 201-7376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(전화 (044) 201-7364, 팩스 (044) 201-737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환경부공고제2020-827호

「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」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9일

환경부장관

「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·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금강수계관리실 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실무위원은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, 금강수계 지역 현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해당 수계의 임직원이 실무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의견제출

『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』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(참조 : 물정책총괄과)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(담당자 연락처 // 전화 044-201-7152, 팩스 044-201-7130, 이메일 zerosum@korea.kr)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)
-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-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((우) 301-03)

● 환경부공고제2020-828호

「영산강·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」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9일

환경부장관

「영산강·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